

동두천시 수해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에 관한 건

의 안 번 호	6-113
--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9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이나 수해 등을 입은 자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금번 수해로 주택의 전과,반과 또는 농지 유실 등으로 재산에 피해를 입은자에 대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재산세,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수해 피해 주택(전과,반과) 및 농지 매물, 유실 등 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재산세(지방교육세 포함)를 100%내 감면함.

나. 수해 피해 주택(전과,반과)의 세대주에 대하여 2011년도 개인균등분 주민세(지방교육세 포함)를 100% 감면

다. 감면 건수 및 금액 : 535건 / 42,333천원 (지방교육세 포함)

2011. 9.15 현재 기준

(단위:천원)

세 목	합 계		전 파		반 파		농지 유실등		비 고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
합 계	535	42,333	23	705	51	2,303	508	39,322	
재산세	501	42,145	12	644	28	2,176	508	39,322	
주민세	34	188	11	61	23	127	-	-	

※ 추후, 이번 수해피해 누락확인시 감면 조치.

3. 관계법령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4항